



정 · 책 · 건 · 의

LPG충전소 과충전방지장치 설치시기 조정 건의

최근 우리 협회는 LPG충전소 과충전방지장치의 설치시기를 조정해줄 것을 가스안전공사에 건의했다.

건의요지

지난 99년 개정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시행규칙 부칙 제3조제2항에 의해 기존 LPG충전사업자들은 오는 2001년 3월까지 지하저장탱크에 과충전경보 또는 방지장치를 설치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나 과충전방지장치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이미 저장되어 있는 가스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므로 영업을 할 수 없고, 이로 인해 LPG차량 운전자들이 큰 불편을 겪어야 하는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 LPG충전업계는 지하저장탱크의 과충전경보 또는 방지장치를 충전사업자들이 5년마다 한번씩 하도록 돼있는 개방 검사때 맞춰 설치하도록 양청드리오니 긍정적으로 검토·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